

##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의 이해도 비교연구: 2019년 개정 전·후를 중심으로\*

박 송 회<sup>†</sup>

김 민 지<sup>‡</sup>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본 연구는 2019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개정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정 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이 개정 전과 비교하여 일반인들의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를 향상시키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더불어 학력 수준과 지각된 스트레스가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과 함께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 남녀 289명을 대상으로 연구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개정 전과 비교하여 개정 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을 읽은 조건에서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개정 전·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과 학력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는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전·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이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각된 스트레스에 의해 부적적으로 조절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였으며, 본 연구의 한계점과 더불어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주요어 : 개정 전·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 객관적 및 주관적 이해도, 학력 수준, 지각된 스트레스, 정책적 제언

\* 본 연구는 박송희(2020)의 석사학위 논문을 재구성한 것임.

† 제 1저자: 박송희,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심리학과 심리학 석사

‡ 교신저자: 김민지,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E-mail : mkim76@sookmyung.ac.kr

2014년 10월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가 신설되면서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이 강화되었다. 이를 형사사법절차에 적용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문’이 제작되었으며, 이는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과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문’으로 구분된다. 2015년 4월부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를 조사 시, 의무적으로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문을 교부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칭함)은 2018년 4월에 피해자 정보제공 사항을 경찰 조사 단계에 맞게 개정되었으며<sup>1)</sup>, 2019년 하반기에는 낮은 가독성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함을 사유로 대폭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개정은 안내문이 모든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점, 범죄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처음 접하는 경찰 단계에서 교부되는 점 등 교부받는 대상과 교부되는 시기의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개정되는 것에 비해 안내문의 독자인 범죄피해자가 권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 안내문을 토대로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는가 등 이해도에 관한 연구적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법과 관련된 특정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의 경우, 법에 표현된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박영도, 최성근, 손희두, 2001). 즉, 법률에 기반하여 구성된 안내문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은 이해도가 낮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제대로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된 안내문이 실제로 범죄피해자들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을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읽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과 대조적으로 EU의 피해자 보호 지침은 ‘이해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understand)’와 ‘이해될 권리(right to be understood)’를 규정하고 있다.<sup>2)</sup> 구체적으로 범죄피해자들이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는 경우를 포함하여 형사사법기관과의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기관들 역시 범죄피해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을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sup>3)</sup> 즉, 범죄피해자가 정보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범죄피해자의 반응이나 입장이 형사사법기관에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은 간단하고 접근하기 쉬운 언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사소통은 이해 능력

1) 경찰청 훈령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문(제869호, 2018. 4. 26) 참고함.

2)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피해자 보호 지침(Directive 2012/29/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establishing minimum standards on the rights, support and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and replacing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1/220/JHA) 참고함. <https://eur-lex.europa.eu/eli/dir/2012/29/oj>

3) Victim's Directive 제 4조 1항에서는 “Member Stat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assist victims to understand and to be understood from the first contact and during any further necessary interaction they have with a competent authority in the context of criminal proceedings, including where information is provided by that authority.”라고 규정하고 있음.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sup>4)</sup> 이를 토대로 한국도 범죄피해자에게 정보제공을 의무화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정보제공이 피해자에게 이해되는 수준 하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되어 현재 경찰 단계에서 교부되는 개정 후 안내문이 개정 전 안내문과 비교하여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지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서면으로 제공되는 안내문의 특성상, 읽기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력 수준과 같은 개인의 특성과 지각된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적 특성이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하고자 한다.

####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

범죄피해자가 최초로 접하는 형사사법기관은 경찰이며, 범죄피해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수사 절차가 진행된다(이동희, 2018). 이 시기에 제공되는 안내문은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과 불안을 감소시키며(김재민, 2015), 피고인으로

부터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장승일, 2010), 형사절차 참여를 가능(장규원, 윤현석, 2012)하게 하는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가 행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2019년 하반기에 낮은 가독성을 사유로 안내문은 대폭 개정되었다.<sup>5)</sup> 구체적으로 개정 전과 비교하여 개정 후의 안내문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를 중점으로 개정되었다. 첫째, 개정 전의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권리에서 일반인들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 한자어 등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부연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의미를 정확하게 기술하였다. 예를 들어, 검찰의 처분 결과를 나열하고,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세히 설명하였다. 즉, 피해자의 관점에서 법률 용어를 보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둘째, 안내문의 권리문장을 “-있습니다.”와 같은 평서문의 형태에서 “-한가요?”와 같은 질문을 추가하여 질의응답 형식으로 문장의 유형을 수정하였다. 이는 법률의 내용을 권위적이지 않고, 대중적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권리가 각각의 형사사법절차 단계에서 적용되는 권리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식화된 순서도를 추가하였다.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적용 시기가 분명한 범죄피해자 권리를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재판 단계로 구분하였다.

4) Victim's Directive 제 4조 2항에서는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communications with victims are given in simple and accessible language, orally or in writing. Such communication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 including any disability which may affect the ability to understand or to be understood.”라고 규정하고 있음.

5) 2020년 3월 24일 정보공개 포털사이트(<https://www.open.go.kr>)를 통해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문 개정 계획 알림’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함. 2020년 4월 1일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받음. 구체적으로 개정 사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문서(개정 사유서)와 함께 개정 전·후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문을 받음.

구체적으로 경찰 단계에는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권을, 검찰 단계에는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요청권, 항고권 및 재정신청권을, 재판 단계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 재판절차 의견진술권, 심리비공개 신청권을 기재하였다. 이는 범죄피해자가 각 권리를 어느 단계에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의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위한 사전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의 내용 및 관련 법적 근거**

본 연구의 목적은 개정 전·후 안내문을 비교하여 개정 후 안내문에서 실질적으로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가 향상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안내문 간 비교가 가능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권,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요청권, 항고권 및 재정신청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 재판절차 의견진술권, 심리비공개 신청권에 국한하여 권리 내용과 관련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정 전·후 안내문에 기재된 권리문장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첫째,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권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조사 및 법원 증인 신문 시 현저히 불안·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 신뢰관계자와 동석이 가능한 권리이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제1항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신뢰관계자 동석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해당 권리는 피해자의 안정을 도모하는 권리로,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제3항). 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

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동법 제221조 제3항).

둘째,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요청권으로 피해자는 수사 결과 및 공판진행사항, 가해자의 법집행·보호관찰집행 상황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에 의거하여, 수사상황, 공판절차에 관한 진행상황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상황이나 보호관찰 집행상황까지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있다. 또한, 범죄수사규칙 제204조에는 경찰관은 적어도 월 1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규원(2011)은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요청권이 가해자의 성명, 주소, 수사상황, 사건의 개요, 기소 여부 및 재판 일정 등 수사의 처리 결과나 공판절차의 진행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셋째, 고소권, 항고권, 재정신청권으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와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즉,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구제제도에는 검찰청법상의 항고,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제도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10조). 항고 이후에도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즉, 재정신청은 검사의 최종처분에 대한 불복권이며, 공판절차 개시에 대한 참여권이다(장규원, 2011).

표 1. 개정 전·후 안내문에 기재된 범죄피해자의 권리

구분	내용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권	개정 전 조사받을 때 심각한 불안이나 긴장이 예상되면,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검찰 단계] 조사를 받을 때 두렵거나 불안하신가요? 가족 등 신뢰하는 사람이 함께 있도록 담당수사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요청권	개정 전 사건진행상황, 가해자의 구속·형집행상황 등 형사절차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후 [검찰 단계] 사건진행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검찰청 민원실이나 피해자지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검찰 처분결과, 재판 진행상황 결과, 구속·석방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권 및 재정신청권	개정 전 고소를 한 경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정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검찰 단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납득하기 어려운가요? 고소·고발을 한 경우 다음과 같이 불복할 수 있습니다. ※ 고소·고발이 아닌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 항고 : 관할 고등검찰청에 재수사해줄 것을 요구(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 - 재항고 : 항고 신청이 기각되거나 3개월 간 처분이 없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재요청 - 재정신청 : 관할 고등법원에 검찰이 기소해줄 것을 요구(통지받은 날부터 10일 내)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	개정 전 법원에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재판 단계] 소송기록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재판장에게 신청하여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절차 의견진술권	개정 전 재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재판 단계] 재판절차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관할 법원 또는 검찰청에 신청하시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정도 및 가해자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심리비공개 신청권	개정 전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게 되는 경우 사생활·신변보호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재판 단계] 법원에 출석할 때 불안하신가요? 법원에 신청하여 피고인과 접촉 차단, 법정 사전 답사, 비공개 재판, 증인 신문 전후 통행 및 보호 등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으로 피해자는 필요한 경우 소송 중인 사건의 공판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이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허경미, 2011).

다섯째, 재판절차 의견진술권으로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즉,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헌법 제27조 제5항).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피해자 증언을 통해 실제적 진실의 발견에 최선을 다하고, 당해 사건의 유무죄와 양형 판단에 참고하는 데에 있다(장규원, 2011). 이에 재판절차 의견진술권은 형사소송법의 제294조의2에서도 보장되고 있다.

여섯째, 심리비공개 신청권으로 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사생활·신변보호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심리 비공개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재판은 공개해야 하며(헌법 제27조 제3항,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공개재판주의는 법원의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에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피해자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논박되는 상황의 경우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이유가 있다. 이로 인해, 당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원은 재판의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 관련 선행연구

2019년 하반기에 개정된 안내문을 토대로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를 살펴본 연구는 없으나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관한 선행연구로 김상훈과 박노섭(2015)은 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 99명을 대상으로 경찰의 권리 고지 방식과 권리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조사하였다<sup>6)</sup>. 그 결과 구두 설명과 서면을 함께 제공받은 집단이 구두 설명 혹은 서면만을 제공받은 집단보다 최초 권리 고지 시 이해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를 처음 제공받았던 시점의 이해도가 권리 내용에 따라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해도가 가장 높았던 이혼 시 부부상당거부 등에 대한 이해도는 연령, 학력, 가정폭력 지속기간, 권리 고지 형식,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권리를 고지하는데 소요된 시간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즉, 타 권리보다 이해하기 쉬운 내용의 권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배경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소 어려운 내용의 권리에 대해서는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이해도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전화 설문 방식으로 이해도를 조사하고, 전문가 1인의 평가로 주관식으로 응답한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를 리커트 척도로 점수화하는 등 이해도 평가 방식의 객관성이 미비하다. 더불어, 피해자가 권리를 고지받은 시점과 이해도를 조사한 시점 간 최대 두 달 정도의 공백기가 존재하여 최초 안내문 고지에 따른 이해도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6) 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안내문에는 임시조치 신청권, 가정보호사건 처리절차, 피해자보호명령 신청권, 이혼 시 법원의 상달권고거부, 가해자의 자녀면접 교섭권 제한 등 절차와 권리가 설명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김상훈(2015)은 일반 성인 여성 99명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과 고지 방식이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안내문은 당시 경찰관이 제공하였던 현행 안내문과 연구자가 제작한 설명식 안내문으로 제시하였으며, 고지 방식은 서면 제공 방식과 서면과 구두 설명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서면과 구두 설명을 함께 제공한 집단이 서면만 제공한 집단보다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내문에 따른 이해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안내문을 통해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설명식 안내문처럼 단순하게 권리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설명으로 인해 길어진 문장의 길이를 고려하는 등 가독성을 함께 제고해야 하고 권리를 고지하는 방식이 고지받는 대상의 이해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 박송희와 김민지(2019)는 여대생 73명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문에 대한 어휘 이해도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특정 법률용어를 줄임말로 이해하여 실제 의미와는 달리 법률용어의 음절을 풀어서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사사법절차 중 재판 단계 이전에 행사할 수 있는 항고와 재정신청의 경우, 재판 이후의 불복절차로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률용어에 대한 오해석이 각 권리 및 지원제도가 내포하는 의미에 대한 오해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절차 적용 시기에 대한 혼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를 경험적으로 살펴

본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를 자기보고식의 리커트 척도로 평가(김상훈, 박노섭, 2015)하고, 어휘에 대한 의미를 주관식으로 평가(박송희, 김민지, 2019)하는 등 연구 참여자가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수준만 평가하거나 혹은 O, X 퀴즈 방식으로 객관적인 이해도 평가(김상훈, 2015)만 측정하였다. 하지만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피해자 스스로가 권리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김상훈, 2015). 즉,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의 유용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가 직관적으로 스스로 이해하는 수준과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권리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는 수준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선행연구(Feick, Park, & Mothersbaugh, 1992; Carlson, Vincent, Hardesty, & Bearden, 2009)에 따르면, 객관적 이해도는 개인들이 실제로 알고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정확한 정보들로 규정된다. 반면, 주관적 이해도는 개인들이 알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의 지식에 대한 스스로의 지각에 초점을 둔다. 주관적 이해도와 같이 스스로 지식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자신감과 관련지어 진다(Carlson et al., 2009). 즉, 자기확신성(self-confidence)을 내포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Park & Lessig, 1981). 예를 들어, 스스로 신뢰관계자와 동석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수준과 상관없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주저하거나 망설일 수 있다. 하지만 주관적 이해도만으로는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어렵다. 한 선행연구에서는 산아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개

인이 정보를 이해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과 실제로 정보를 이해하는 것의 상관관계를 발견했으나, 영양 문제에 대해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adecki & Jaccard, 1995). 즉,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지식수준이 객관적인 지식수준과 항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Alba & Hutchinson, 2000; Ellen, 1994). 따라서, 안내문의 궁극적인 목적을 토대로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객관적 권리 이해도 평가만 실시하거나 혹은 주관적 권리 이해도 평가만 실시하는 것보다는 객관적 및 주관적 권리 이해도를 모두 평가하는 방식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를 주관적, 객관적 측면에서 측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을 읽고, 개인이 해당 권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 수준을 주관적 권리 이해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을 읽고, 권리의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적인 수준을 객관적 권리 이해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 학력 수준

학력 수준에 따른 읽기 능력의 차이는 피의자 권리 이해도를 평가한 연구(백윤석, 이미선, 2019)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보다 대학교 졸업 이상의 집단에서 피의자 권리 이해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에도 피의자 권리

고지문인 미란다 경고문에 대한 어휘력 수준을 측정하여 전반적인 읽기의 수준을 평가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Rogers, Hazelwood, Sewell, Harrison, & Shuman, 2008). 그 결과 안내문에는 최소 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어휘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고등학교 2 - 3학년 수준의 어휘 실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성인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국형 피의자 권리 고지문에 대한 이해도 평가를 실시한 김민지와 피세영(2014)의 연구에서도 성인들과 비교해 미성년자가 피의자 권리 고지에 사용된 단어나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개인의 학력 수준과 읽기 능력이 비례함을 의미하며, 이는 곧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 결과에 의하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문장 이해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혜진, 2013). 구체적으로 한국의 16세부터 65세까지의 문장 이해력 평균 점수는 OECD 국가의 평균 점수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대를 살펴봤을 때, 한국의 청년층은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최상위권에 속하였으나 노년층은 최하위 3개국 중 하나에 속하였다. 즉,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노년층과 청년층의 문장 이해력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최고 연령대와 최저 연령대의 문장 이해력 차이는 교육 경험과 높은 상관성을 가진다(황혜진, 2015). 출생연도가 1947년도에서 1957년도에 해당하는 노년층의 경우, 전후 산업화 시기에 청소년기를 지냈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적었다(황혜진, 2015). 실제 한국의



25 - 34세 층이 전문대 이상 교육을 받은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반면, 55 - 65세 층에서 전문대 이상 교육을 받은 비율은 최하위권에 속하였다(OECD, 2013). 이는 학력 수준과 문장 이해력의 높은 상관성을 뒷받침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개정 전 안내문보다 법률용어를 최소화하고, 쉽게 서술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읽기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개정 후 안내문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의 특성 즉, 학력 수준에 따라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는 낮아질 수 있다. 특히, 읽기 능력의 차이가 극명하였던 고등교육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간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의 특성에 의해 발생한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의 간극은 곧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의 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에 기재된 항고권에 대해 저학력 수준의 범죄피해자는 이해하지 못하고, 고학력 수준의 범죄피해자는 이해한다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는 고학력의 배경을 지닌 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셈이다. 즉, 개인의 특성으로 인한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는 범죄피해자 정보권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지각된 스트레스

개인을 둘러싼 상황이 개인의 자원이나 역량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할 때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Coyne & Lazarus, 1980; Holroyd, 1976). 이는 특정 상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지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지닌 역량과 자원에 비해 상황적인 요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스트레

스를 겪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작업 기억력, 주의력, 반응 억제 및 인지 유연성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모두 손상된 것으로 밝혀졌다(Girotti et al., 2018). 더 나아가 이러한 손상은 집중력, 충동 조절, 기억 및 계획 능력을 감소시켜 수행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선행연구는 참여자들에게 10분 동안 청중 앞에서 즉흥 연설을 하도록 요청하는 스트레스 테스트(Trier Social Stress Test: TS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TSST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TSST를 실시한 집단의 기억력과 계획 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Luethi, Meier, & Sandi, 2009). 즉, 스트레스는 개인의 수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적응적으로 기능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존재함에 따라 현재 당면해 있는 상황이 스트레스 상태라고 평가하는 정도인 지각된 스트레스(perceived stress)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Cohen, Kamarck, & Mermelstein, 1983; Lazarus & Folkman, 1984).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각된 스트레스는 불안과 우울을 모두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 통제 이론(Eysenck, Derakshan, Santos, & Calvo, 2007; Derakshan & Eysenck, 2009; Eysenck & Derakshan, 2011)에 따르면 불안은 작업 기억의 중앙관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고갈시킴으로써 인지적 처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개인이 어렵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을 때, 또는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등 특정한 조건에서만 발생한다. 따라서,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높은 불안이 야기되고, 자원 고갈이 발생하여 효과의 감소(예: 정확성), 효율의 감소(예: 반응

시간)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텍스트 수준 처리 모델(Just & Carpenter, 1992; Kintsch, 1988; Kintsch & Mangalath, 2011; Zwaan & Radvansky, 1998)에 의하면 텍스트 이해력은 주의력, 작업 기억력 등에 크게 의존한다. 즉,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작업 기억에 정보를 동시에 저장하고 처리하는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Oakhill & Cain, 1997).

Qureshi과 동료들(2011)은 심리적, 신체적 외상에 노출되었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을 비교하여 외상 노출과 비교할 때 어떤 인지 영역이 외상 후 스트레스와 일관되게 연관되어 있는지 관련 선행연구들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상에 노출된 성인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사람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주의력 저하, 기억력 손상 등 인지 장애와 학습 장애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개정 전 안내문에서 가독성을 제고시킨 개정 후 안내문을 교부받더라도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을 수 밖에 없는 범죄피해자들의 경우에는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인지적 처리 수준이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일반인보다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 또한 낮아질 수 있다.

#### 연구가설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를 경험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법률용어를 일상용어로 순화하거나 혹은 부가설명을 추가하는 방식, 형사절차상 순서를 도식화하여 각 단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안내문은 개정 전 안내문보다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자기 이해도 평가인 주관적 권리 이해도와 실제적인 이해도 평가인 객관적 권리 이해도 모두 향상될 것이라 예상한다.

더불어 선행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학력 수준은 서면으로 제공되는 안내문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가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개정 전 안내문보다 좀 더 쉽게 권리를 설명하고 있는 개정 후 안내문에서는 학력 수준과 같은 개인의 특성이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연구에서도 상대적으로 쉬운 내용의 권리에 대한 이해도는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상훈, 박노섭, 2015). 이를 바탕으로 개정 후 안내문을 읽는 집단은 학력 수준에 따른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개정 전 안내문을 읽은 집단은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개정 전 안내문의 경우, 낮은 학력 수준 조건이 높은 학력 수준 조건보다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가 낮지만, 개정 후 안내문의 경우에는 학력 수준에 따른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안내문과 학력 수준의 비교차 상호작용(ordinal interaction)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개인의 인지 처리 과정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의존될 수 있으며, 그 중 지각된

스트레스 변인은 인지 처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토대로 안내문이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의 지각된 스트레스의 수준이 조절하는지 파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범죄피해자의 스트레스 상황을 고려한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1.** 개정 후 안내문을 읽은 조건에서 개정 전 안내문을 읽은 조건보다 객관적 및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개정 전 안내문을 읽은 조건에서는 학력 수준에 따른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 차이가 있을 것이나, 개정 후 안내문을 읽은 조건에서는 학력 수준에 따른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가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3.** 개인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개정 후 안내문을 읽은 조건과 개정 전 안내문을 읽은 조건의 객관적 및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 차이는 작아질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을 중단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판단하기 위해 삽입한 안내문의 내용을 묻는 3개의 O, X 평가 문항의 오답자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과거

에 안내문을 교부받았던 경험을 보고한 10명과 사법기관 종사 경험이 있는 1명의 응답 자료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289명(여성 143명, 남성 146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44.06세( $SD=13.71$ )로, 최소 연령 만 20세에서 최대 연령 만 69세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 연구절차

연구 참여자 모집은 온라인 설문 패널조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되었다. 온라인 홈페이지에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하였으며, 해당 게시글을 읽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만 온라인 설문에 응답할 수 있었다. 설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우선,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측정하고,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문항에 응답한 후, 각 조건에 따른 안내문을 읽었다. 이해도를 평가하기 전 연구 참여자들이 안내문의 내용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30초간 전체 안내문을 제시한 페이지에 노출되도록 환경을 조작하였다. 전체 안내문을 제시한 페이지를 넘기면, 다시 전체 안내문을 제시한 페이지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였지만 각 권리마다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각각의 권리문장을 제시한 상태에서 주관적 및 객관적 이해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설명문과 동의서, 설문 등 연구 참여에는 대략 15분 -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 측정도구

####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 평가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을 읽고, 이를 얼마

표 2.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 O, X 평가 문항

구분	문항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권	1 경찰 조사가 시작된 후 혹은 조사 도중에도 신뢰관계자와 함께 있기를 요청할 수 있다.
	2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자는 평소 나와 친분이 있는 부모, 형제만 가능하며 상담사, 변호사는 신뢰관계자가 아니므로 동석할 수 없다.
	3 신뢰관계자는 경찰 질문에 당신을 대신해 대답할 수 있다.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요청권	1 피해자라고 해도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형사절차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2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형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처리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항고권 및 재정신청권	1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명백한 위법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고소인은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 만약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3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4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권	1 소송기록 내용이 궁금하면 재판장에게 신청하여 기록을 눈으로 볼 수는 있으나 복사해서 가지고 올 수는 없다.
	2 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3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신청을 해야 소송기록의 복사가 가능하다.
재판절차 의견진술권	1 피해자가 신청하더라도 재판장이 허가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에 관한 의견은 진술할 수 있다.
	3 심리적 안정을 위해 피해자 의견 진술은 보통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심리비공개 신청권	1 심리비공개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일반인들은 해당 과정을 볼 수 없다.
	2 심리비공개를 신청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심리비공개는 불가하다.
	3 심리공개보다 심리비공개 상태에서 한 당신의 진술은 오히려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객관적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해 각 권리의 내용과 적용 시기에 대해 평가하였다. 우선, 각 권리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O, X 평가 문항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개발하였다. 첫째, 김상훈(2015)이 개발한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 평가 문항을 참고하여 개별 권리가 내포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평가 문항을 개발하였다. 둘째, 문항의 정답 정확성, 내용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3인<sup>7)</sup>에게 문항의 적절성을 확인받았다. 셋째, 예비 조사를 통해 문항의 의미가 불명확한 부분을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불성실한 응답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 문항을 삽입하는 등 최종 수정하였다. 각 권리의 내용에 대한 O, X 평가 문항은 총 19개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정답을 1점, 오답은 0점을 부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각 권리가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어느 시기에 적용되는지 질문하였다. 예를 들어, “신뢰관계자의 동석권은 어느 시기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하고 경찰 조사 단계, 검찰 조사 단계, 재판 단계, 형 집행 단계로 나누어 복수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권리의 적용 시기에 대한 평가 문항은 총 6개였으며, 각 단계에 대한 정답을 1점, 오답은 0점을 부여하였다. 즉, 각 권리가 적용되는 단계를 올바르게 답하는 경우 4점으로 채점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25문항으로 객관적 이해도를 평가하였다. 항목별 객관적 이해도는 각 권리에 해당하는 O, X 평가 문항의 정답 점수와 적용 시기 평가 문항의 정답 점수의 합으로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항고 및 재정신청권은 5문항(0점 - 8점)으로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권,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요청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 재판절차 의견진술권, 심리비공개 신청권은 각각 4문항(0점 - 7점)으로 객관적 이해도를 평가하였다. 전체 객관적 이해도는 전체 평가 문항 점수의 총합(0점 - 43점)으로 산출하였다.

전체의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을 읽고, 이를 통해 권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인 전반적인 주관적 이해도는 안내문 제시 후 리커트 7점 척도(1: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 7: 이해하기 매우 쉽다)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세부적인 권리에 대한 주관적 이해도는 해당 권리문장만 제시 후 리커트 5점 척도(1: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 5: 이해하기 매우 쉽다)로 측정하였다.

### 지각된 스트레스

스트레스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Cohen과 동료들(1983)이 개발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를 박준호, 서영석(2010)이 한국 실정에 맞게 변안하여 타당화 과정을 거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10문항으로, 지난 한 달 동안 경험한 상황들이 스트레스로 지각되는 정도를 측정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정도를 측정하는 부정적 지각요인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긍정적 지각요인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긍정적 지각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의 응답을 역채점한 후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지를 묻는 문항들에 대한 응답과 합산함으로써 지각된 스트

7) 변호사 1인과 서울 및 경기 소재 대학의 법학교수 2인

레스 총점을 산출하였다. 응답은 리커트 5점 척도(1: 전혀 없었다 - 5: 매우 자주 있었다)로 측정하였으며, 지각된 스트레스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50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일치도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부정적지각 .82, 긍정적 지각 .85였다.

여 이원배치 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안내문과 개인의 지각된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효과가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1(Hayes, 2013)을 이용하여 조절분석을 실시하였다.

### 분석방법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IBM SPSS 25.0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안내문에 따른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안내문과 학력 수준이 전체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하

### 결 과

####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여성이 143명(49.5%), 남성이 146명(50.5%)이었으며, 연령은 20대가 60명(20.8%), 50대가 58명(20.1%), 60대가 58명(20.1%)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57명(19.7%), 30대가 56명(19.4%)이었다. 학력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132명(45.7%), 대학교 졸업이 114명(39.5%)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

표 3.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빈도(%)

변인	구분	개정 전 (N=143)	개정 후 (N=146)	전체 (N=289)
성별	여성	71(49.7)	72(49.3)	143(49.5)
	남성	72(50.3)	74(50.7)	146(50.5)
연령	20대	30(21.0)	30(20.5)	60(20.8)
	30대	28(19.6)	28(19.2)	56(19.4)
	40대	28(19.6)	29(19.9)	57(19.7)
	50대	29(20.3)	29(19.9)	58(20.1)
	60대	28(19.6)	30(20.5)	58(20.1)
		고등학교 졸업 미만	4(2.8)	8(5.5)
학력 수준	고등학교 졸업	67(46.9)	65(44.5)	132(45.7)
	대학교 재학	8(5.6)	4(2.7)	12(4.2)
	대학교 졸업	55(38.5)	59(40.4)	114(39.5)
	대학원 재학 이상	9(6.3)	10(6.8)	19(6.6)

원 재학 이상이 19명(6.6%), 고등학교 졸업 미만이 12명(4.2%), 대학교 재학이 12명(4.2%)이었다. 개정 전 안내문과 개정 후 안내문에 할당된 연구 참여자의 성별, 연령, 학력 수준의 비율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n.s.*). 자세한 내용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전체의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을 읽고, 이를 통해 권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는 평균 4.80점( $SD=1.23$ )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을 읽고, 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측정된 결과 총 43개 문항 중 평균 약 31개 문항( $SD=3.59$ )을 바르게 이해해 100점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약 72점의 이해도 수준을 보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한 달 동안 경험한 지각된 스트레스는 평균 28.52점( $SD=5.37$ )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 간의 Pearson 상관분석 결과 첫째, 전반적인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와 전체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 $r=.138, p<.05$ )을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범죄피해자 권리가 이해하기 쉽고 판단할수록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가 높았다. 둘째, 학력 수준과 전반적인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 $r=.135, p<.05$ ), 전체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 $r=.165,$

$p<.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가 높았으며,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가 높았다. 셋째, 학력 수준과 지각된 스트레스는 유의한 부적 상관( $r=-.132, p<.05$ )을 나타냈다. 즉,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보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표 4에 제시하였다.

안내문에 따른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 차이

####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 차이

안내문에 따라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는 안내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270)=-2.060, p<.05$ ). 개정 후 안내문을 읽은 집단( $M=31.38, SD=3.13$ )이 개정 전 안내문을 읽은 집단( $M=30.52, SD=3.96$ )보다 전체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내문에 따른 각 항목별 객관적 이해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항고권 및 재정신청권( $t(287)=-3.517, p<.01$ )과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 $t(279)=-8.239, p<.001$ ), 재판절차 의견진술권

표 4.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N=289)

구분	변인	1	2	3	4
1	전반적인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	1			
2	전체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	.138*	1		
3	학력 수준	.135*	.165**	1	
4	지각된 스트레스	-.075	.056	-.132*	1

\* $p<.05$ , \*\* $p<.01$

표 5. 안내문에 따른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 차이

구분	M(SD)		t	df
	개정 전	개정 후		
전체 <sup>a</sup>	30.52(3.96)	31.38(3.13)	-2.060*	270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권 <sup>b</sup>	5.01(0.89)	4.71(0.82)	3.063**	287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요청권 <sup>b</sup>	4.85(1.31)	4.11(1.08)	5.222***	275
항고권 및 재정신청권 <sup>c</sup>	5.20(1.30)	5.75(1.36)	-3.517**	287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 <sup>b</sup>	4.70(1.31)	5.88(1.13)	-8.233***	279
재판절차 의견진술권 <sup>b</sup>	5.31(1.24)	5.59(1.02)	-2.053*	287
심리비공개 신청권 <sup>b</sup>	5.44(1.22)	5.34(1.19)	0.692	287

a : 0점에서 43점의 범위로 측정, b : 0점에서 7점의 범위로 측정, c : 0점에서 8점의 범위로 측정, \* $p < .05$ , \*\* $p < .01$ , \*\*\* $p < .001$

( $t(287) = -2.053, p < .05$ )은 개정 후 안내문을 읽은 집단에서 개정 전 안내문을 읽은 집단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심리비공개 신청권의 이해도는 안내문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n.s.$ ),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권( $t(287) = 3.063, p < .01$ ),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요청권( $t(275) = 5.222, p < .001$ )은 오히려 개정 전 안내문을 읽은 집단에서 개정 후 안내문을 읽은 집단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5에 제시하였다.

####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 차이

안내문에 따라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인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는 안내문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n.s.$ ). 안내문에 따른 각 항목별 주관적 이해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권, 항고권 및 재정신청권, 재판절차 의견진술

권, 심리비공개 신청권은 집단 간 주관적 이해도가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n.s.$ ). 그러나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요청권( $t(280) = -3.405, p < .01$ ),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 $t(287) = -4.927, p < .001$ )에서 개정 후 안내문을 읽은 집단이 개정 전 안내문을 읽은 집단보다 해당 권리를 더 쉽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6에 제시하였다.

#### 안내문과 학력 수준에 따른 전체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 차이

전체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대한 안내문과 학력 수준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을 살펴보면, 안내문과 학력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n.s.$ ). 그러나 안내문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1,285) = 4.472, p < .05$ ). 개정 후 안내문을 읽은 집단( $M = 31.38, SD = 3.13$ )에서 개정 전 안내문을 읽은 집단( $M = 30.52, SD = 3.96$ )보다 전체 객관적 범죄피해



표 6. 안내문에 따른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 차이

구분	M(SD)		t	df
	개정 전	개정 후		
전반적 <sup>a</sup>	4.78(1.24)	4.82(1.23)	-0.219	287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권 <sup>b</sup>	3.71(0.95)	3.86(0.94)	-1.408	287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요청권 <sup>b</sup>	3.35(0.87)	3.68(0.76)	-3.405**	280
항고권 및 재정신청권 <sup>b</sup>	3.00(0.95)	2.95(0.89)	0.506	287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 <sup>b</sup>	3.38(0.89)	3.88(0.85)	-4.927***	287
재판절차 의견진술권 <sup>b</sup>	3.66(0.89)	3.59(0.84)	0.670	287
심리비공개 신청권 <sup>b</sup>	3.62(0.88)	3.51(0.82)	1.019	287

a : 리커트 7점 척도(1: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 7: 이해하기 매우 쉽다)로 평가, b : 리커트 5점 척도(1: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 5: 이해하기 매우 쉽다)로 평가, \*\* $p < .01$ , \*\*\* $p < .001$

표 7. 안내문과 학력 수준에 따른 전체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

변인	SS	df	MS	F	partial $\eta^2$	p
안내문 (A)	54.810	1	54.810	4.472*	.015	0.035
학력 수준 (B)	154.648	1	154.648	12.617***	.042	<0.001
A x B	0.138	1	0.138	0.011	.000	0.916
오차	3493.328	285	12.257			

\* $p < .05$ , \*\*\* $p < .001$

자 권리 이해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력 수준의 주효과도 유의하였다( $F(1,285)=12.617, p < .001$ ). 대학 재학 이상의 집단( $M=31.68, SD=3.30$ )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 $M=30.22, SD=3.73$ )보다 전체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가 높게 나타났다.

안내문이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지각된 스트레스가 안내문이 범죄피해자 권

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적적으로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 Model 1(Hayes, 2013)를 통해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안내문이 전체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이 지각된 스트레스에 의해 조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n.s.$ ). 이와 대조적으로 표 8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주관적 이해도에 대한 안내문과 지각된 스트레스의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b=-0.05, t(285)=-1.767, p < .1$ ). Aiken,

표 8. 안내문과 전반적인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 관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변인	b	SE	t	p	LLCI	ULCI
(상수)	3.21	1.24	2.594	0.010	0.77	5.64
안내문 (A)	1.39	0.78	1.777	0.077	-0.15	2.93
지각된 스트레스 (B)	0.05	0.04	1.273	0.204	-0.03	0.14
A x B	-0.05	0.03	-1.767	0.078	-0.10	0.01

West, Reno(1991)에 따라 조절변인인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1SD)와 낮은 경우(-1SD)를 비교하였을 때, 개정 후 안내문의 전반적인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가 개정 전 안내문에 비해 더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지각된 스트레스가 전반적인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를 예측하는 변인인지 확인하고자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정 전 안내문 조건에서 지각된 스트레스는 전반적인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를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n.s$ ). 반면, 개정 후 안내문 조건에서 지각된 스트레스가 전반적인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41, \beta=-.178, t(144)=-2.174, p<.05$ ). 지각된 스트레스는 전반적인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를 17.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2=.178, Adj R^2=.224, F(1,144)=4.727, p<.001$ ). 즉, 개정 후 안내문의 경우,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주관적으로 안내문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의 주요 의의와 정책적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가독성을 제고하여 수정한 개정 후 안내문에서 개정 전 안내문보다 전체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내문 간 전반적인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는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정 후 안내문이 일반인들에게 범죄피해자 권리에 대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에서 객관적 및 주관적 이해도가 모두 유의한 상승이 확인되었다. 개정 전 안내문과 달리 개정 후 안내문에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10주년 기념 백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등사’를 ‘복사’로 수정하였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권리의 신청 주체를 ‘법원’에서 ‘재판장’으로 수정하였다. 즉, 법률용어를 일상용어로 적절하게 대체하였고, 해당 권리의 요청 방법을 구체화시켜 객관적 및 주관적 이해도가 향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개정 후 안내문을 읽은 집단이 개정 전 안내문을 읽은 집단보다 모든 권리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하지 않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권,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요청권은 개정 전 안내문에서 더 높은 객관적 이해도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객관적 이해도를 권리 내용과 권리 적용시기로 구분하여 독립표

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권의 경우, 권리 내용에 대한 이해도에서는 유의한 점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n.s.$ ), 개정 전 안내문을 읽은 집단의 권리 적용시기에 대한 이해도( $M=2.57, SD=0.58$ )가 개정 후 안내문을 읽은 집단( $M=2.25, SD=0.5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86)=4.729, p<.001$ ).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요청권의 경우, 개정 전 안내문을 읽은 집단의 권리 내용에 대한 이해도( $M=2.73, SD=0.59$ )가 개정 후 안내문을 읽은 집단( $M=2.53, SD=0.61$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87)=2.918, p<.005$ ). 또한, 개정 전 안내문을 읽은 집단의 권리 적용시기에 대한 이해도( $M=2.11, SD=1.12$ )도 개정 후 안내문을 읽은 집단( $M=1.58, SD=0.90$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72)=4.425, p<.001$ ).

이는 법률용어를 일상용어로 순화하고, 부연 설명을 추가하는 등 어휘의 난이도를 조절함으로써 가독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안내문을 개정하는 것과 실제로 이를 읽는 독자에게도 가독성이 제고되어 이해도가 향상되는 것은 별개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전반적으로 현행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에서 형사사법절차 단계를 도식화하여 순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한 부분은 일반인들에게 오해의 소지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적용 시기가 분명한 범죄피해자 권리의 경우, 각 권리가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재판 단계 중 어느 단계에 적용되는지 명시적으로 표기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순서도에 맞춰 범죄피해자 권리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인해 적용 시기가 광범위한 범죄피해자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단계에만 적용 가능한 것처럼 표기된 것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추후 개정 시에는 순서도를 명확히 하여 적용 시기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하거나 모두 삭제하고 각 권리에 대한 설명의 일환으로 적용 시기를 언급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안내문과 학력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는 전체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안내문과 무관하게 대학 재학 이상 수준의 집단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수준의 집단보다 전체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가 높았다. 개정 후 안내문에서도 여전히 학력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이해도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학력 수준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없다면 이는 안내문을 제작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피해자의 개인적인 특성과는 무관하게 범죄피해자 권리에 대해 이해시키는 것이 안내문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추후에는 학력 수준에 따른 이해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전반적인 내용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안내문이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에 의해 조절되지 않았다. 이는 두 가지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크지 않아 자원 고갈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안내문을 읽고 이해하는데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이해도 평가가 O, X와 같이 이분형으로 이루어져 개인의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의 변화를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 평가 방식이 지각된 스트레스의 세밀한 차이를 변별하는데 역부족이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안내문이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부적으로 조절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와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가 정적 상관( $r=.138$ ,  $p<.05$ )임을 고려한다면, 개인의 지각된 스트레스로 인해 안내문을 어렵다고 인식할수록 안내문에 기재된 권리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정보를 이해하는 것보다 개인이 정보를 이해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내포하며(Brucks, 1985; Pieniak, Aertsens, & Verbeke, 2010), 객관적 이해도보다 주관적 이해도가 동기 부여 요소로 더 강력하다는 점을 보고하였다(Selnes, 1986; Feick et al., 1992). 즉,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을 읽고 이를 이해하기 쉽다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안내문을 꼼꼼하게 읽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질 수 있는 반면, 안내문을 읽고 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안내문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겠다는 의지가 낮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배부하는 시기가 범죄피해 직후 경찰 단계에서 조사받는 상황이고, 안내문을 읽는 범죄피해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신체적, 경제, 심리, 사회 영역 전반에서 다양하고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최수형, 김지영, 황지태, 박희정, 2014)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수준이라는 특수적인 조건을 고려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인지적 자원 고갈의 상황을 경험할 가

능성이 높고, 교부받은 범죄피해자 권리에 대한 주관적 이해도는 매우 낮을 수 있음이 예상된다. 이에 개인의 지각된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완화시킬 수는 없지만 범죄피해자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으로 익숙함, 친숙함을 높여 우회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연성진과 서주연(2015)은 실태 조사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제도들에 대해 사전지식이 있었다면 피해 후 당하는 고통에서 보다 빨리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례들을 보고하면서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미리 국민으로 하여금 범죄피해자 권리에 대해 인지하고 있도록 홍보하고 계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실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조 제2항은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 조사, 연구, 교육, 홍보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주기적으로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실시하는 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고, 문항의 정답 정확성, 내용 적절성 등 법률 전문가 3인에게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받았으나 객관적인 타당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용 타당도는 객관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전문가의 논리적 사고에 입각한 분석을 통해 검사 문항이 측정하려고 하는 내용을 제대로 측정하는지를 질적으로 평가한다(성태제, 시기자, 2019). 이로 인해 전문가가 누구냐에 따라 측정 문항의 적절성 여부가 상이할 수 있다. 때문에 추후에는 계량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식으로 도구의 타당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예비 조사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응답 결과를 검사이론에 입각하여 점검하는 고전 검사 이론(Classical test theory, DeVellis, 2006)을 활용할 수 있다. 총 연구 참여자 수 중 정답자의 비율, 즉 정답률로 문항 난이도(Item Difficulty)를 계산한다(김석우, 2015). 문항 변별도(Item Discrimination)는 검사 총점에서 점수가 높은 연구 참여자와 점수가 낮은 연구 참여자로 나뉘었을 때 점수가 높은 연구 참여자의 정답률이 점수가 낮은 참여자의 정답률보다 의미있게 높으면 변별력이 있는 문항으로 평가한다(김석우, 2015). 이에 따라, 난이도가 쉽고 특정 선택지에 대한 쓸림 현상이 심한 문항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를 O, X 퀴즈 형식으로 평가하였다. 실제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 평가 문항 사이에 권리를 묻는 매우 쉬운 3개의 문항을 삽입하여 이를 1개라도 틀린 연구 참여자를 분석 데이터에서 제외하였지만, 이외의 문항에서 여전히 50%의 확률로 정답을 맞힐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추측으로 답한 문항이 맞았을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 추후에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객관식 평가 문항과 서술형 평가 문항을 조합하여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를 평가하는 방식이 검토되어야 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를 권리문장 단위에서 권리가 내포하는 의미를 파악하고, 내용을 숙지하는 수준의 이해도로 평가하였다. 즉, 권리를 개인의 실제 상황에 적용하여 필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이해도는 평가하지 못했다.

반면, 피의자 권리 이해도는 미란다 권리 이해도 검사(Comprehension of Miranda Rights:

CMR), 미란다 권리 재인 검사(Comprehension of Miranda Rights-Recognition: CMR-R), 미란다 권리 어휘 검사(Comprehension of Miranda Vocabulary: CMV)와 같이 미란다 경고 각각의 문장에 대한 의미와 사용된 단어의 뜻을 평가하는 도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미란다 권리 적용 검사(Function of Rights in Interrogation: FRI)도 존재한다. 이는 신문 시 미란다 경고에 있는 각각의 문장이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를 평가하는 도구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와 같이 앉아 있는 의뢰인을 묘사한 그림을 제공하면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만남에 관한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이후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의뢰인이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동안, 의뢰인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등 변호인 조력권에 대한 문항을 질문한다(차준호, 2006). 즉, FRI는 문장의 의미에 대한 이해도 보다 높은 수준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평가 도구로 권리를 개인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판단하여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피검자가 CMR, CMR-R, CMV의 평가 도구를 통해 미란다 경고를 이해한 것으로 나타날지라도 FRI의 낮은 점수를 받았을 경우, 전반적으로 미란다 경고의 의미를 모두 이해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Grisso, 1998). 이를 참고하여 추후에는 범죄피해자 권리의 적용 이해도 평가 및 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경찰서 내에서 조사받는 상황을 묘사하고,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를 객관식 형태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도구 개발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이 교부받

는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개정되었는지 경험적인 검증을 시도한 점에 큰 함의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를 기초로 향후에는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이 모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김민지, 피세영 (2014). 한국형 피의자 권리 고지문에 대한 이해도 평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4), 23-46.
- 김상훈 (2015). 피해자 권리고지 방식과 권리 이해도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훈, 박노섭 (2015).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방식과 이해도에 관한실증적 연구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13(1), 117-141.
- 김석우 (2015). 교육평가의 이해. 서울: 학지사.
- 김재민 (2015). 피해자 정보권에 관한 고찰. 경찰학논총, 10(3), 375-402.
- 박송희, 김민지 (2019).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의 이해도 평가. 한국경찰연구, 18(3), 25-58.
- 박영도, 최성근, 손희두 (2001). 법률문화 및 법률용어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 한국 법제 연구원.
- 박준호, 서영석 (2010).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3), 611-629.
- 백윤석, 이미선 (2019). 피의자신문 전 권리 고지 방식 및 내용이 피의자 권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법, 10(2), 111-127.
- 성태제, 시기자 (2019).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연성진, 서주연 (2015). 범죄피해자 권리고지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동희 (2018).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경찰의 역할과 과제. 경찰법연구, 16(1), 179-205.
- 장규원 (2011). 피해자학 강의. 과주: 살림.
- 장규원, 윤현석 (2012). 수사기관의 범죄피해자 정보제공제도 발전방안. 피해자학연구, 20(1), 57-82.
- 장승일 (2010).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7, 217-235.
- 차준호 (2006). 국내 피의자 권리 고지 실태 및 일반 청소년과 소년범의 피의자고지이해도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형, 김지영, 황지태, 박희정 (2014). 전국범죄 피해조사 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허경미 (2011). 피해자학. 서울: 박영사
- 황혜진 (2013). 정상 노화과정에서의 작업기억 능력과 문장이해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혜진 (2015). OECD 성인역량조사결과에 나타난 세대 간 문해력의 차이. 통일인문학, 61, 585-612.
- Alba, J. W., & Hutchinson, J. W. (2000). Knowledge calibration: What consumers know and what they think they know.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7(2), 123-156.
- Brucks, M. (1985). The effects of product class knowledge on information search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1), 1-16.

- Carlson, J. P., Vincent, L. H., Hardesty, D. M., & Bearden, W. O. (2009). Objective and subjective knowledge relationships: A quantitative analysis of consumer research finding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5(5), 864-876.
- Cohen, S., Kamarck, T., & Mermelstein, R. (1983).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4), 385-396.
- Coyne, J. C., & Lazarus, R. S. (1980). *Cognitive style, stress perception, and coping*. Handbook on stress and anxiety, 144-158.
- Derakshan, N., & Eysenck, M. W. (2009). Anxiety, processing efficiency, and cognitive performance: New developments from attentional control theory. *European Psychologist*, 14(2), 168-176.
- DeVellis, R. F. (2006). Classical test theory. *Medical care*, 44(11), 50-59.
- Ellen, P. S. (1994). Do we know what we need to know? Objective and subjective knowledge effects on pro-ecological behavior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30(1), 43-52.
- Eysenck, M. W., & Derakshan, N. (2011). New perspectives in attentional control theo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7), 955-960.
- Eysenck, M. W., Derakshan, N., Santos, R., & Calvo, M. G. (2007). Anxiety and cognitive performance: attentional control theory. *Emotion*, 7(2), 336.
- Feick, L., Park, C. W., & Mothersbaugh, D. L. (1992). Knowledge and knowledge of knowledge: What we know, what we think we know, and why the difference makes a difference.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9(1), 190-92.
- Girotti, M., Adler, S. M., Bulin, S. E., Fucich, E. A., Paredes, D., & Morilak, D. A. (2018). Prefrontal cortex executive processes affected by stress in health and disease. *Progress in Neuro-Psychopharmacology and Biological Psychiatry*, 85, 161-179.
- Grisso, T. (1998). *Instruments for assessing understanding & appreciation of Miranda rights*. Professional Resource Press / Professional Resource Exchange.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Press.
- Holroyd, K. A. (1976). Cognition and desensitization in the group treatment of test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4(6), 991.
- Just, M. A., & Carpenter, P. A. (1992). A capacity theory of comprehension: individual differences in working memory. *Psychological review*, 99(1), 122.
- Kintsch, W. (1988). The role of knowledge in discourse comprehension: A construction-integration model. *Psychological review*, 95(2), 163.
- Kintsch, W., & Mangalath, P. (2011). The construction of meaning. *Topics in Cognitive Science*, 3(2), 346-370.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uethi, M., Meier, B., & Sandi, C. (2009). Stress

- effects on working memory, explicit memory, and implicit memory for neutral and emotional stimuli in healthy men. *Frontiers in Behavioral Neuroscience*, 2:5. doi: 10.3389/neuro.08.005.2008
- Oakhill, J. V., & Cain, K. (1997). *Assessment of comprehension in reading*. The psychological assessment of reading, 176-203.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3). *OECD skills outlook 2013: First results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s*. OECD Publishing.
- Park, C. W., & Lessig, V. P. (1981). Familiarity and its impact on consumer decision biases and heuristic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2), 223-230.
- Pieniak, Z., Aertsens, J., & Verbeke, W. (2010). Subjective and objective knowledge as determinants of organic vegetables consumption. *Food quality and preference*, 21(6), 581-588.
- Qureshi, S. U., Long, M. E., Bradshaw, M. R., Pyne, J. M., Magruder, K. M., Kimbrell, T., & Kunik, M. E. (2011). Does PTSD impair cognition beyond the effect of trauma?. *The Journal of neuro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23(1), 16-28.
- Radecki, C. M., & Jaccard, J. (1995). Perceptions of knowledge, actual knowledge, and information search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1(2), 107-138.
- Rogers, R., Hazelwood, L. L., Sewell, K. W., Harrison, K. S., & Shuman, D. W. (2008). The language of Miranda warnings in American jurisdictions: A replication and vocabulary analysis. *Law and Human Behavior*, 32(2), 124-136.
- Selnes, F. (1986). Subjective and objective measures of product knowledge contrasted.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3, 67-71.
- Zwaan, R. A., & Radvansky, G. A. (1998). Situation models in language comprehension and memory. *Psychological bulletin*, 123(2), 162-185.

1 차원고접수 : 2020. 09. 25.

심사통과접수 : 2020. 10. 28.

최종원고접수 : 2020. 11. 11.



## Comprehension of 「Crime Victims' Rights Guide」: Focused on Before and After the 2019 Revision

**Song Hee Park**

**Min Chi Kim**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current victims' rights guide, which was revised during 2019, with former victims' rights guide to determine whether the current guide improved the comprehension of victims' rights among lay people. In addition, we examined the effect of the level of education and perceived stress on the comprehension of the victims' rights. A total of 289 participants were asked to answer a series of questions to examine their comprehension level of the victim's rights and to measure their level of education and perceived stress level.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bjective comprehension level the current guide condition was higher than the former one, but no difference was found with the subjective comprehension level.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conditions of the guide and educational level was not found on the objective comprehension of the victims' rights. The effect of the conditions of the guide on the subjective comprehension of victims' rights indicated a tendency to decrease by perceived stress. Finally, polic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Before and After Revision Crime Victims' Rights Guide, Objective and Subjective Comprehension, Level of Educational, Perceived Stress, Policy Implication